

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(안)

의안 번호	317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. 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본예산 출연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

2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출연금 : 40,000천원
 - 필 요 성 : 보증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
 - 사업내용 :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 보증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지원으로 업계의 자금 융통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

3. 세부내용

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연대상	출연금액			증감사유	비고
		2026년 본예산	2025년	증감액		
1	경기신용보증재단	40,000	40,000	-		

□ 출연대상 : 경기신용보증재단

- 설립근거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(설립)
- 설립목적 :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,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,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지원으로 자금 융통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
- 기능 및 주요사업
 - 신용보증 : 금전채무를 보증
 - 경영지도 : 취약부분에 대한 경영지원

□ 출연금액 : 40,000천원(2025년 40,000천원)

□ 출연근거

-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(기본재산의 조성)

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중소기업의 적기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적 기업경영으로 고용창출 및 세수증가

□ 검토의견

-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관계법령 발취

□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

제6조(기본재산의 조성 <개정 2013.5.1.>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05.10.31.>
 1.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
 2. 정부의 출연금
 3. 금융기관의 출연금
 4. 기업의 출연금
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<개정 2012.5.11.>
 6.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<개정 2012.5.11.>
-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[전문 개정 2013.5.1.]
-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